

익명의 형사판결문, 법원이 기자에게 공개해도 될까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86352 손해배상(기) 판결—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38살 여성 A씨(피아노 강사)는 2012. 6. 25. 경북 상주시청 민원실에 결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와의 혼인신고서를 접수하였다. A씨는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 및 기록행사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혼인신고 1년 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가 제기한 항소 및 상고는 전부 기각되었다.

전주지방법원의 공보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A씨와 B씨의 이름을 전부 비실명처리하여 해당 형사판결문을 한 통신사 기자에게 제공하였다. 기자는 A씨의 판결문을 토대로, A씨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혼인신고를 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 A씨가 혼인신고 직후 B씨에게 “혼인신고 했다는데도 안 믿니”, “오늘의 소중한 날이고 니가 필요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기사화하였다.

A씨는 공보판사와 해당 기자, 언론사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대한민국(판사가 공무원

이므로)과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억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청구금액 1심 3억 7,500만 원, 2심 5억 5,800만 원). 해당 소송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였다.

2. 기사 속 'A씨',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해당 기사에서 기자는 A씨를 ‘방 모(38·피아노 강사)씨’라고 기재하였다. 이 정도의 기재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례의 기준은 어떻게.

판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일반인이 아닌 A씨의 지인들이 해당 기사를 보고 ‘이 기사는 A에 대한 것이구나’라고 인식할 정도이면 당사자 특정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A씨는 “‘방 모(38·피아노 강사)씨’라는 기재로도 본인의 지인이나 주변인들은 해당 기사가 자신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기사의 내용판으로는 A씨의 지인들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A씨가 ‘본인의 지인들은 해당 기사를 보고 기사 속 사람이 A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 판단하였다.

3. 형사판결문을 제3자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

해당 기사에서 당사자 특정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법원은 A씨의 나머지 주장들을 살필 필요가 없었지만, A씨가 제기한 다른 법적 쟁점들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갔다. A씨는 공보판사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문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이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여 기사화하였다고 하여 A씨의 명예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필요시 재판의 심리 과정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 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제3조는 법원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언론보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내규 제2조는 ‘언론보도에 사법행정의 기본정책에 대한 보도(정책보도), 사법부나 법원의 사법행정 기타 일반적 사항에 관한 보도(일반보도) 뿐만 아니라 재판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관한 보도(재판보도)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원은 공보판사가 비실명처리하였다고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제시한 행위는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리라는 점, ▲ 각 법원이 공보관을 두고 법원의 홍보, 언론보도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는 점, ▲ 이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가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한 점, ▲ 공개 당시 A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A씨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씨까지 모두를 비실명처리한 점, ▲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2013년도부터 사건과 관계 없는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에 대한 공개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 재판의 심리와 선고는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방청을 통해 기사 내용 정도는 쉽게 취재하여 보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판결문 열람 행위만으로 그 과정에 위법이 있다거나 A씨의 명예,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자극적인 제목, 기사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담하나

(1) A씨는 해당 기사에서 기사가 허위의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짝사랑 남성 몰래 혼인신고한 여성 벌금형’이었다. A씨와 B씨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기사가 판결문을 살펴본 것 이외에 별도의 취재를 한 사실은 없었고, A씨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언론보도는 그 특성상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또한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판례는 일관하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며,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주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짝사랑 남성 몰래 혼인신고’라는 제목의 표현과 관련해 법원은, 해당 기사의 중요 부분은 ‘타인 모르게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을 기사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취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기사는 A씨가 좋아하던 남성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면서 그 남성을 ‘짝사랑 남성’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A씨가 ‘좋아하는 사람’임을 표현한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 A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A씨는 기사 중 ‘A씨는 결혼신고 직후 B씨에게 “혼인신고를 했다는데도 안 믿니”, “오늘의 소중한 날이고 니가 필요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이자 조작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기사에 적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문자메시지의 순서가 실제 시간적 흐름과 다르게 기사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사의 중요한 부분(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A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내용으로 처벌받았다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특정인의 형사판결 공개, 어느 경우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나

기사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반강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는 비밀비재하다. 이 때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은 ‘공익성’이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

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범죄사실을 전하는 기사의 경우는 어떨까. 보도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 판례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법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등의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즉, 범죄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일반 기사와 마찬가지로, 기사로 얻는 공익과 피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지만, 범죄보도의 특성상 피고인의 실명 공개까지 허용할 정도로 그 공익성을 더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한 기사는 실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A씨의 범죄사실이 시사성이 적지 않아 A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에 관한 정도의 침해 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6. 판결에 대한 검토

앞서 소개한 법원의 판단 내용은 대부분 1심 판결문에 나온 것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였으며,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3심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 중 A씨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억 7,500만 원(1심)에서 5억 5,800만 원(2심)으로 확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A씨가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1, 2심 형사재판부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추가로 이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A씨는 몰래 혼인신고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형사재판부가 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 제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본인이 관련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다며 이



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사실 자체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사 형사재판부의 재판장이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 훈시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A씨의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짜사랑’하던 남성이 아니었는데도 기자가 기사에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니가 필요해” 등의 문자메시지는 혼인신고 직후에 보낸 것이 아니었는데도 기사에 가짜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에 보낸 것처럼 기사화 해 억울하였을 수 있다. 특히 A씨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공보판사가 기자에게 열람하도록 해 기사화된 점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공보판사가 제한된 범위의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관행이기도 하거니와 앞서 본 것처럼 법적 근거가 있는 공보업무의 일환이다. 이번 판결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익명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